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1차 여성가족위원회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〉
■ 이견태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5740호)

2026. 3.

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옥순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이건설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5. 12. 30.
3. 회 부 일 : 2025. 12. 3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·교육·취업·생활·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주거지원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. 학교 밖 청소년이 주거비용 마련을 위하여 생계에 매달리면 그만큼 학업 복귀나 자기계발이 어려워지게 되고,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면 가출·비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3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

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, 주거지원의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3 신설)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1조의3(주거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행법¹⁾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

1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상담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, 진로상담,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교육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10조(직업체험 및 취업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생활지원, 의료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,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- 전국 222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²⁾하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,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교밖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다만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³⁾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규

1. ~ 4. (생략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및 태도를 습득·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, 문화공간지원, 의료지원(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인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),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, 법률교육,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의2(건강진단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2) [참고자료1] 참조

3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위기청소년”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.

5. “가정 밖 청소년”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·학대·폭력·방임, 가정해체,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.

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(이하 “특별지원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, 학업지원, 의료지원, 직업훈련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. 다만,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

정하고 있으며, 위기청소년 중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한 주거지원과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도 특별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학교 밖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.

또한,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「주거급여법」, 「공공주택특별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등에 따라 주거급여,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, 긴급주거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,

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쉼터, 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

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보호, 자립 지원,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(이하 “청소년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쉼터: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

2. 청소년자립지원관: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

3. ~ 4. (생략)

제32조의3(자립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
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
3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과 LH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⁴⁾.

특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은 청년전세임대·청년매입임대·건설임대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며, 일정 범위 내 우선공급 또는 별도 공급물량이 배정되고 있음.

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급여,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, 긴급주거지원 등 주거복지 제도안에서 소득·재산·주거환경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,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상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.

참고로, 「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⁵⁾」 결과에 따르면, 학교 밖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정책은 교통비 지원, 활동 바우처, 검정고시 준비 지원, 진학정보 제공, 진로탐색 등 학업·진로 관련 지원으로 나타났음⁶⁾.

4) [참고자료 2] 참조

5) <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필요성(수요도)>

(단위: 점, 4점 만점)

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
교통비 지원	청소년활동 바우처	검정고시 준비지원	진학정보 제공	진로탐색 체험
3.33	3.22	3.18	3.16	3.11
6순위	7순위	8순위	9순위	10순위
대학 진학 및 입시 상담/직업교육· 훈련	직업훈련 참여/자격증 취득 등 자립수당 지원	청소년 자유공간 제공	건강검진, 문화예술 활동 지원	학습/진로 멘토, 진로/직업 통합 프로그램
3.10	3.08	3.02	2.98	2.97

6)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2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검정고시, 진로,

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취지에는 공감하나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가정문제, 학업수행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,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, 공공임대주택, 긴급주거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645

자립·취업지원, 건강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향후 교통비, 활동바우처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함.

【참고자료 1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

□ 개요

- (목적)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·교육·진로, 직업체험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
- (법적근거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(대상) 9~24세의 학교 밖 청소년
 - * 「초·중등교육법」상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고등학교(유사과정 교육 학교)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,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(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)
- － (지원센터) 시·군·구 단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1:1 상담부터 학업·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 제공

<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>

(단위 : 개소)

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222	26	17	9	9	6	3	5	1	32	13	13	16	10	23	15	21	3

□ 사업 내용

- 학교 밖 청소년이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학업 및 진로를 탐색하며 사회성 훈련, 생활 및 건강지원, 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
 - － (발굴 및 연계)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의 연계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(교육부 등 협업)
 - － (상담지원) 초기개별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 시 심층 상담 등 연계 지원
 - － (학업지원) 학습동아리, 멘토링, 검정고시,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
 - － (진로지원) 자립·취업을 위한 직업훈련·일경험을 제공하는 자립·취업 서비스
 - － (건강지원) 무료 급식 및 건강검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

【참고자료 2】 주거지원 사업 개요

□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

구분		청년전세임대	청년매입임대	건설임대 (통합공공임대)	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
우선 순위 (지원)		1순위*에 해당 *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, 자립준비청년, <u>시설 퇴소청소년</u> ※ 3순위까지 규정	시설 퇴소청소년, 보호종료아동 우선 지원* * 1~3순위에 우선하여 지원	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 * 철거민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<u>시설 퇴소청소년</u> , <u>보호종료 아동</u> 등	지원대상*에 포함 * 소년소녀가정, 위탁 가정, 교통사고유자녀 가정, 재난유자녀가정, 자립준비청년, <u>시설 퇴소청소년</u>
지원 대상		청소년복지시설(쉼터, 자립지원관, 회복지원시설) 퇴소(퇴소 예정자 포함)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			
공급물량		전세임대 주택 일부 를 무주택자인 청년 (자립준비청년, 시설 퇴소청소년)에 공급	공급물량의 5%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	시설퇴소청소년, 보호종료아동 우선공급 물량(60%)의 5% 범위	별도 공급물량 규정 없음
지원자격		19~39세, 미혼	19~39세, 미혼	최초공급 시 미혼, 소득요건 필요	추가요건 없음
임대 조건 (평균)	임대 보증금	100만원	100만원	100만원	없음
	월 임대료	전세지원금*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~2% 이자 해당액 * 수도권 120백만원, 광역시 95백만원, 기타 85백만원	시중시세 40~50%	기본 보증금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 시중시세 35~90%	(월임대료) 20세 이전 무상, 이후 보증금 제외한 이자(연1~2%) ★ 자립준비청년, 시설 퇴소청소년: 22세 까지 무료, 거주 5년 이내 월임대료(이자) 50%감면

□ 주거지원 주요사업[마이홈 포털]

* 중위소득 :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

구분	영구임대주택	주거급여 지원	기타지원	
			긴급주거지원	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
대상	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	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	위기사유*의 발생으로 거주 장소 또는 거주 비용이 필요한 사람 * 실직, 질병, 화재 등	쪽방, 고시원,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,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
근거	「공공주택특별법」	「주거급여법」	「긴급복지지원법」	「주거기본법」
소득 기준	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%이하	소득인정액이 가구 중위소득* 48% 이하	중위소득 75% 이하	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% 이하
재산 기준	자산: 237백만원 차량: 45백만원	-	총재산: 165~310백만원	자산: 241백만원 차량: 37백만원
지원 내용	임대주택 제공	임차: 월임대료 지원 * 191천원 ~ 667천원 자가: 주택수선비용 지원 * 590만원 ~ 1,601만원	임시거소 제공 주거비 지원 * 189천원 ~ 874천원	매입·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